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지 적 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
----------	-----

제출년월일 : 2021. 5.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를 위임사무로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 제104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15. ~ 2021. 5. 5.(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첨부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대상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출 제외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평가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8호 다음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동장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b> 위 입 사 무(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사 무 명</th> <th style="width: 33%;">근 거 법 령</th> <th style="width: 33%;">수입기관</th> </tr> </thead> <tbody> <tr> <td>1.~18.(생략)</td> <td></td> <td></td> </tr> <tr> <td><b>19.&lt;신설&gt;</b></td> <td></td> <td></td> </tr> </tbody> </table>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18.(생략)			<b>19.&lt;신설&gt;</b>			<p><b>[별표]</b> 위 입 사 무(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사 무 명</th> <th style="width: 33%;">근 거 법 령</th> <th style="width: 33%;">수입기관</th> </tr> </thead> <tbody> <tr> <td>1.~18.(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 <u>19.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u>   <u>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u>   <u>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u> </td> <td> <u>○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u>   <u>○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b>동장</b></td> </tr> </tbody> </table>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18.(현행과 같음)			<u>19.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u>  <u>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u>  <u>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u>	<u>○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u>  <u>○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u>	<b>동장</b>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18.(생략)																			
<b>19.&lt;신설&gt;</b>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18.(현행과 같음)																			
<u>19.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u>  <u>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u>  <u>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u>	<u>○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u>  <u>○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u>	<b>동장</b>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지적과장 차미영